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자에 언론취재 종사자 추가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579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3
1.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자에 언론취재 종사자 추가	3

I. 개요

1.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57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 16.

(3) 회 부 일 : 2025. 1.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참사 발생 시 ‘언론취재’도 현장대응업무 중 하나로 명시하여 취재 언론인이 겪는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보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현장대응업무를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은 해당 법에 의한 법적 보장 여부가 불분명함. 2022년 4월, 한국기자협회에 따르면 기자 61%가 취재 과정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하였음. 특히 2022년 이태원참사를 계기로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지만, 법적 구속을 담보하지 않는 권고 지침이며, 지상파 3사를 비롯한 일부 방송사만 자체적으로 전문 심리상담 기관과 연계한 트라우마 치유를 제공하는 형편임.

이에 현행법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를 ‘구조, 복구, 치료,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로 개정하여 사고 및 참사에 따른 현장 취재 언론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보장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II. 검토 의견

1.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자에 언론취재 종사자 추가

□ 개정안은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언론취재를 담당한 사람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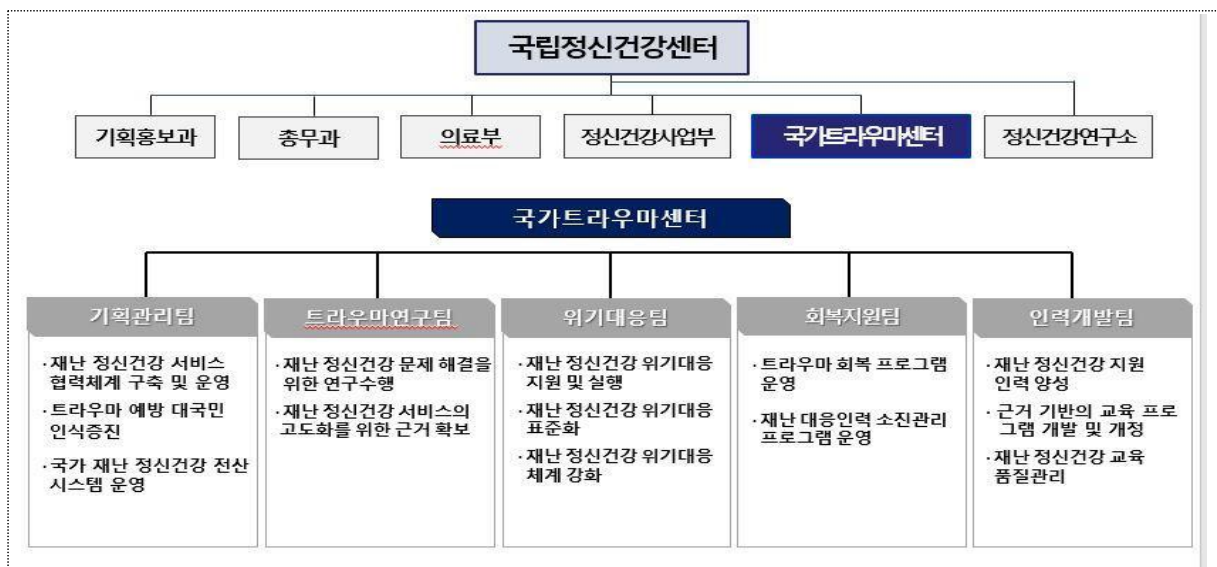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u>치료</u>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2. ----- ---- <u>치료, 언론취재</u>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뿐 아니라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도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제공하는 심

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¹⁾,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그 역할을 맡고 있음.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위기대응팀 및 회복지원팀 등 5개의 팀으로 구성되고, 정원은 공무원 16인 및 정신건강전문요원²⁾ 등 공무직 33인을 포함하여 49인임.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조직도>



*자료: 보건복지부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보급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체계의 구축
5.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6.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7. 재난이나 사고 이후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
8.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

□ 개정안은 언론취재에 종사하는 사람도 심리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데에서 입법취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인데,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2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의 제정 동기도 이와 유사함. 해당 가이드라인은 재난현장을 취재하는 기자가 피해자 또는 유족과 동화되어 심리적 거리를 두기 어렵게 되거나 충격적인 재난 장면을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두통이나 구토와 같은 신체적 반응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는 데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다만, 향후 입법과정에서 언론취재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재난현장이 갖는 엄중한 특성을 고려할 때 언론 관련 법률³⁾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의 취재로 한정하거나, 취재뿐

3) 예컨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열거된 언론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5. “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를 말한다.
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잡지 및 기타간행물을 말한다.
7.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뉴스통신”이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을 말한다.
9. “뉴스통신사업자”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0.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11.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3. “언론사등의 대표자”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등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 신문 또는 외국 잡지 등 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4.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5. “언론보도”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6.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 편집을 담당하는 종사자도 포함시킬지 등에 대하여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재난현황에 대한 취재를 담당하는 종사자를 현행법에서의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대상자로서 각 호의 하나를 신설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는 재난현장 언론취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트라우마에 대하여도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98

-
17.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18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말한다.
2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